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  
수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96. 12. 18.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6. 11. 23.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96. 11. 23.
- 다. 상정일자: 제42회 정기회 제11차위원회 ('96. 12. 18.)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류승권 위생과장)

가. 제안이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97. 1. 1.부터 당해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었기에 그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함.(안 제3조)
-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등의 수수료는 당해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정함.(안 제4조)
-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1996. 8. 20 보건복지부령 제32호)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업 영업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을 우리구 조례로 제정하여 '97. 1. 1.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 별표중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업종별 수수료 안”은 입법체계상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업종별 수수료(제3조 관련)”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 5. 토론요지: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 6. 수정안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6. 12. 18. 유동관 위원 외 1인

나. 수정이유: 조례안(별표)중 입법체계에 어긋나는 부분을 수정코자 함.

다. 수정 주요 골자  
-안(별표)제목중 “업종별 수수료 안”을 “업종별 수수료(제3조 관련)”으로 수정함.

- 7.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9. 기타사항: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  
수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1996. 12. 18.  
제안자: 시민보건위원장

- 1. 수정이유  
-조례안(별표)중 입법체계에 어긋나는 부분을 수정코자 함.
- 2. 수정주요골자  
-안(별표) 제목중 “업종별 수수료 안”을 “업종별 수수료(제3조 관련)”으로 수정함.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  
수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  
수료징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별표) 제목중 “업종별 수수료 안”을 “업종별 수수료(제3조 관련)”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원안 · 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별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u>업종별 수수료안</u></p> <div data-bbox="207 545 706 99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50px 0;">“생략”</div>	<p>(별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u>업종별 수수료(제3조 관련)</u></p> <div data-bbox="786 545 1290 99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50px 0;">“원안과 같음”</div>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  
수료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144
----------	-----

제출년월일 : 1996. 1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97. 1. 1부터 당해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었기에 그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함(안 제3조)
-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등의 수수료는 당해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정함(안 제4조)
-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함(안 제5조)

3. 제정근거

- 공중위생법(개정 1995. 12. 29 법률 제 5100호) 제40조 1항, 제40조 2항, 제40조 3항, 제40조 4항, 제40조 5항
- 공중위생법시행규칙(개정 1996. 8. 20 보건복지부령 제32호) 제52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 예산조치 필요없음

첨부 :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  
수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금액 및 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업”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생접객업·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을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 법 제40조제1호 중 “제14조의2 제3항”을 제외한 영업·제조업등의 허가 또는 신고, 법 제40조제2호에 의한 변경허가, 법 제40조제3호에 의한 변경신고, 법 제40조제4호에 의한 양수등 신고, 법 제40조제5호에 의한 면허등의 수수료 징수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납부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또는 신고등의 수수료는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허가 또는 신고등에 대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구금액중 제2호 “각종 인허가및신고사항(28종)”을 “각종인·허가및신고사항(24종)”으로 하고, 동호,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중 종목란 (5) 내지 (7)”을 삭제하고, “(8) 내지 (12)”를 “(5) 내지 (9)로 하며, 동호, 나. 신고·신청에 관한사항중 종목란 (2)”를 삭제하고, “(3) 내지 (16)”을 “(2) 내지 (15)”로 각각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업종별 수수료 안

구분 종별	업태별	신규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숙박업	호텔업	12만원	6만원
	콘도미니엄업	12만원	6만원
	여관업	4만원	2만원
	여인숙업	1만원	5천원
목욕장업	공동탕업	1만 2천원	6천원
	가족탕업	1만 2천원	6천원
	한증막업	1만 2천원	6천원
	사우나탕업	6만원	3만원
	터키탕업	6만원	3만원
	복합목욕탕업	6만원	3만원
	컴퓨터게임장업	3만원	1만 5천원
유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6만원	3만원
	기타유기장업	3만원	1만 5천원
	이·미용업	1만 2천원	6천원
위생관리용역업		7천원	3천5백원
세탁업		7천원	3천5백원
위생처리업		7천원	3천5백원
세척제제조업		2만원	1만원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7천원	3천5백원
장난감 제조업		7천원	3천5백원
기 타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허가(신고)수수료에 준함 ○이·미용사 신규 면허: 3천원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2천원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6. 12. 12.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6. 11. 2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96. 11. 23.

다. 상정일자: 제42회임시회 제6차위원회(‘96. 12. 12) 상정, 질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평국 건축과장)

가. 제안이유

‘96. 1. 5일 개정 건축법령 시행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1996. 8.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 자치구 조례로 규정된 사항중 법령 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조항 폐지 및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우리구 현실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익과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건축법 제5조의3(자치구간의 통일성이 필요한 건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구건축조례중 시조례와 통일성을